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비 미계상 및 배출자 신고 미이행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발주자의 의무)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의거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2~2023년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철거 공종을 설계내역에 반영하고도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고, 또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양천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계획(배출자 신고)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건설폐기물 처리 소홀 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자	준공금액 (천원)	부적정 내역
2022년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22.03.15. ~'22.12.22.		1,148,776	폐콘크리트 58톤 발생하였으나 배출자 신고 미이행
2023년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23.04.05. ~'23.12.18.		1,155,400	건설폐기물 처리비 미계상 및 배출자 신고 미이행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 계상 및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